

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1. 9. 24 규칙 제1108호
일부개정 2015. 12. 18 규칙 제1438호(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
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 2020. 1. 31 규칙 제1554호(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
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, 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1. 31>

제2조(기금의 지원신청) 「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. 31>

1. 사업계획서
2. 단체의 정관
3.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
4. 기타 필요한 증빙서

제3조(기금지원 결정)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.

1. 기금사용 목적의 적정여부
2. 지원사업의 적정여부
3. 금액산정의 적정여부
4.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
5. 신청자의 국제협력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능력여부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교부)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 전

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계획 변경등)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
2. 기금을 변경·사용하고자 할 때

제6조(기금의 정산 및 보고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지원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
3.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
4.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
5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
6.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

제8조(정기회)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 년도의 기금결산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적립금 운용명세
2.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

3. 수입 및 지출계산서

4. 기타 기금결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
2.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

3.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기금의 운용관리)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1. 기금 관리대장(별지 제4호서식)

2. 기금 지급대장(별지 제5호서식)

3. 현금 출납부(별지 제6호서식)

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) 기금운용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기금사용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시기는 기금이 조성목표액의 80퍼센트 이상 적립된 후 사용한다.

부칙 <2015. 12.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
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. 31 규칙 제1554호,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
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사업계획

가. 사업명

나. 목적

다. 내용

라.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

(단위: 천원)

내역	소요금액	산출근거	지원신청액
계			

마. 소요예산 조달방법

(단위: 천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계		
국제협력진흥기금		
동 사업 수익금		
자체운용자금		
회원모금		
독지가후원금		
기 타		

2.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

가. 단체의 구성현황

임원수				회원(단원)수			
회장	부회장	이사	기타	계	정회원	준회원	기타
명	명	명	명	명	명	명	명

나. 활동실적

기간	활동내용	비고

3. 단체의 법적자격구비 현황

등록(허가·신고) 번호	등록(허가, 신고) 일자	등록(허가, 신고) 내용	등록기관명

[별지 제2호서식]

국제협력진흥기금교부청구서				
단 체 명		대 표 자		
소 재 지				
사 업 명				
사업목적				
사업개요				
사업기간				
소요경비제원 (단위: 천원)				
총사업비	기금보조액	자체부담액	후원금	기타
사업계획서	따로붙임			
<p>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(인) 예금계좌 - 은행명 - 계좌번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 margin-top: 20px;">안 양 시 장 귀하</p>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국제협력진흥기금정산서

- 1. 사업명
- 2. 기금집행상황

(단위: 천원)

내역	수입액	지출액	잔액	비고
국제협력진흥기금				
자 체 부 담 금				
기 타				

- 붙임: 1.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
 2. 지원금 집행내역 1부
 3. 영수증 사본, 세금계산서 각 1부
 4.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
 5. 각종 증빙자료 각 1부

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 년 월 일

 주 소:
 단체명:
 대표자: (인)

안 양 시 장 귀하

1. 지원사업 추진실적

사 업 개 요	
추진 실적	
효 과	
문제점 및 건의	

2. 지원금 집행내역

(단위: 천원)

집행내역	집행액			
	계	국제협력진흥기금	자체부담금	기타
계				

[별지 제4호서식]

국제협력진흥기금관리대장

연월일	예금					인출		잔액	비고
	재원	예금종류	금액	이율	기간	적요	금액		

[별지 제5호서식]

국제협력진흥기금지급대장

연월일	적요 (사업명)	지급처			지급액	잔액	확인
		단 체	소재지	대표자			

[별지 제6호서식]

국제협력진흥기금현금출납부

연월일	적요	수입	지출	잔액	결재		
					담당자	담당	과장